

##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7
----------	------

제출년월일 : 2011 .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2011년 상반기 중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게 되며,
- 방문고지는 통·반장을 통해 실시 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통하여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통장 등을 통하여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민원봉사과
입 안	실 · 과장 직위 · 성명	민원봉사과장 정 신 애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주소전환팀장 배 윤 중
자	담 당 자 성명 · 전화	시설 8급 정 운 영

